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3. 10.3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3. 10.3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지적과장 손 성천)

가. 제안이유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.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해 오던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징수가 자치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관련 수수료를 신설함.(제3조관련,안 별표)

▣ 토지이용 및 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(3종)

연번	종 목	단위	수수료	비고(종전)
1	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(칼라)	1필지	1,500원	없음
2	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(흑백)	1필지	1,000원	1,000원
3	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열람	1필지	100원	1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2.2.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<개정내용>

○ 제3조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사목에 규정된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(6) 내지 (8)을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수수료는 1필지당 1,500원, 흑백 발급 수수료는 1,000원, 열람 수수료는 100원으로 규정하였음.

<검토의견>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2003.1.1일 이후 징수된 수수료는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 (오윤수 위원) :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2.2.4.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마포구수수료 징수조

레 개정이 늦은 이유와 지금까지 근거없이 발급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의 흑백발급 건수 및 칼라 발급건수는?

○ 답변요지 (손성천 지적과장) :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는 25개구가 같은 시스템으로 발급했기 때문에 법해석 및 업무 조율과정에서 늦었으며 3개구는 6월경에 개정했고 나머지 구는 우리구와 같은 실정임.

2003년 1월부터 9월 까지 총 발급건수는 28,700여건이며 이중 칼라 발급건수는 일일 200건임.

○ 질의요지 (박지위 위원) : 마포구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 근거도없이 잘못 징수된 수수료를 환불할 의사가 있는지?

○ 답변요지 (손성천 지적과장) : 환불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음.

○ 질의요지 (신봉현 위원장) : 징수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차 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.

○ 답변요지 (손성천 지적과장) :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 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3. 10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·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해 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관련 수수료를 신설함.(제3조 관련, 안 별표)

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(3종)

연번	종 목	단위	수수료	비 고 (종전)
1	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(칼라)	1필지	1,500원	없 음
2	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(흑백)	1필지	1,000원	1,000원
3	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	1필지	100원	1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규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2002.12.30 법률 제6853호) 제132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 또는 승인 : 지적과 협의 완료

※ 서울시도시58410-3157(2002.12.05) 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
수수료 관련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” 참조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03.9.25 ~ 10.15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- (3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관련, 별표 "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"의 제1호중 "(38종)"을 "(41종)"으로 하고, 동표동호 "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41종)"중 사목에 (6) 내지 (8)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종 목	단 위	수수료액	비고
(6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(칼라)	1필지	1,500원	
(7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(흑백)	1필지	1,000원	
(8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	1필지	100원	

부 칙

- 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(칼라 발급에 관한 적용례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전까지는 흑백 발급수수료를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]

현 행			개 정 (안)		
1.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(38종)			1.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(41종)	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종 목	단위	수수료액
나. ~ 바. <생략> 사.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(1)~(5) <생략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/div>			나. ~ 바. <현행과 같음> 사.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(1)~(5) <현행과 같음> (6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(칼라) 1필지 1,500원 (7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(흑백) 1필지 1,000원 (8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1필지 100원		